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36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¹⁾하도록 한 기한이 금년(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5호, 2019. 5. 2. >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7115호, 2019. 5. 2. >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 <u>2020년 12월 31일</u> -----.

※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대강당, 소강의실, 세미나실, 운동장, 테니스장 등을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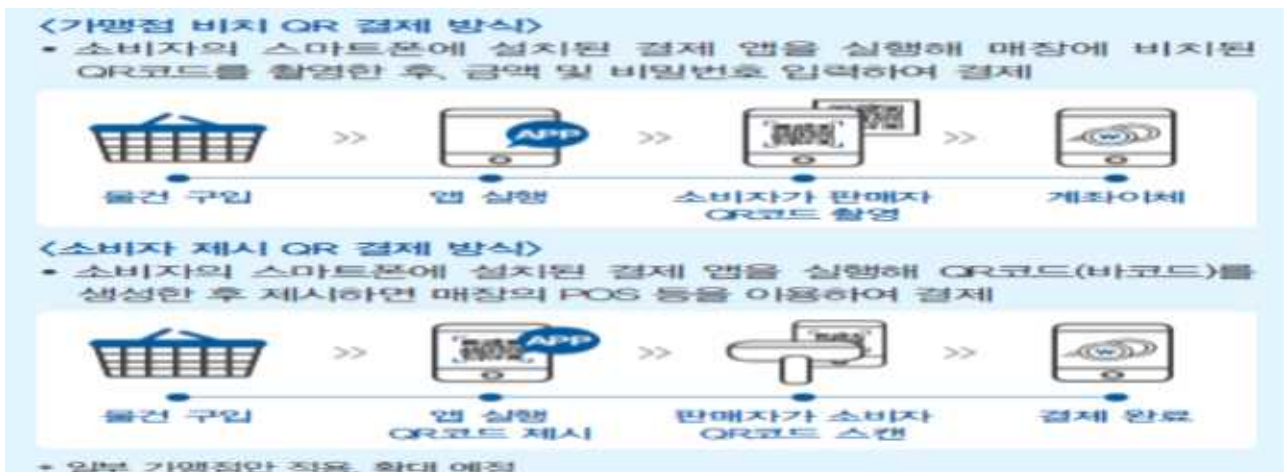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현황>

구분	강의실명	면적(m ²)	수용인원	비고
강의 시설	대강당	649	516	
	소강당	438	200	
	인재홀	440	90	국제회의장
	1강의실	185	100	

-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강의실	185	100	
	3강의실	123	70	
	4강의실	123	70	
	5강의실	123	70	
	201강의실	72	30	
	202강의실	56	20	
	203강의실	56	20	
	204강의실	108	60	
	301강의실	144	70	6급미래양성 전용강의실
	302강의실	112	20	
	303강의실	51	24	
체육 시설	운동장	9,487		
	테니스장	2,885		
다솜관	숙소	23	2	30실

※ 제로페이 is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은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며, 스마트폰 간편결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금액이 뜨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면 결제되는 방식임.



- 안 부칙 제2조는 본 감면의 유효기한을 2019년(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12월 31일까지)으로 1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바,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조례 개정('19.5)이후,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감면 연장실익 검토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인재개발원 제로페이 사용료 감면 실적〉

구분	계		8월		9월		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제실적(A)	168	15,920	69	6,410	40	4,089	59	5,421
제로페이(B)	3	2,260	-	-	2	1,529	1	731
이용률(B/A)	-	-	-	-	-	-	-	-

- 또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 실적 추이를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의 기간이 제로페이 활성화와 효과를 담보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여부와 감면기한 연장(2021년 12월 31일 이후까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 한편, 금번 정례회에 동 조례안과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19건(참고자료①)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는 바, 제로페이의 운영실적과 예약 시스템구축 현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연번	구분	조례명	감면대상	감면율
1	조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장 입장료, 체육시설 위생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사용료: 10% 수강료: 5%
2	조례	도시공원 조례	서울대공원 등 입장료, 공헌시설 이용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이용료: 10%
3	조례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4	조례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과학관 관람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5	조례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청 시설 대관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6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교양 취미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7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8	조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형 제작 비용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9	조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0	조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1	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한강공원 내 유람선, 체육·휴양시설 등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2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 등 강습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3	조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질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4	조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인재개발원 내 강의·체육시설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5	조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회의실, 강당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6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및 서울영어마을 수유 관악캠프 이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7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립자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8	조례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야영장소, 회의실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9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이용 시민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참고	규칙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규칙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학습비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6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5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15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15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u>2020년 12월 31일</u> -----.</p>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사업수입×30%(제로페이 이용자))×5%(이용료 감면)
- 한시적 적용 : '20.1~12(1년)

구분	사업수익 (18.1~12월)	제로페이 이용 결제 (30% 가정)	제로페이 이용시 감면손실액 (5% 할인)	비고
금액 (단위 : 천원)	48,700	14,610	730	

4. 작성자

부서명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성명 : 홍대화 주무관 (3488-2058)